

정 정 신 고 (보 고)

2026년 7월 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집합투자규약
삼성ELS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HE-1호[주식-파생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4년 7월 18일
3. 정정 사유
- 법령 개정사항 및 전자증권법 반영 등
4. 정정요구 · 명령 관련 여부 : 아니요
5. 정정사항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제6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의무)	③신탁업자는__감시업무, (추가)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 업무 등을 수행한다.	③신탁업자는__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 업무 등을 수행한다.
제8조(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권의 총 좌수)	제8조(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 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 1좌당 1원을 기준으로 제19조에서 정한 기준가격을 적용하며, 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총 좌수는	제8조(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권의 총 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 1좌당 1원을 기준으로 제19조에서 정한 기준가격을 적용하며, 설정할 수 있는 수익권(법 제189조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10조좌로 한다.	제1항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신탁의 수익권, 이하 “ 수익증권” 이라 한다)의 총 좌수는 10조좌로 한다.
제13조(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표시한다.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한다.
제14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제14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집합투자업자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	제14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집합투자업자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 전자증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로, 이하 “ 전자등록기관” 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②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 “ 수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비치하여야 한다. 1. 투자자의 성명 및 주소 2. 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법 제30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④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실질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수익증권을 점유하며, 예탁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생략)	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삭제) ③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절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④(현행과 같음)
제15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①실질수익자는 당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 1,000,000,000좌권의 7종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	<삭제>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여야 한다	
제16조(수익증권의 재교부)	①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현물보유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재교부하는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삭 제>
제17조(수익증권의 양도)	①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①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②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예의 대체의 기재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②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18조(수익자명부)	제18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에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한국에탁결제원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에탁결제원은 관련법령·신탁계약·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한국에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한국에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실질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실질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실질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에탁결제원은 그 통보 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 실질수익자명부”라 한다	제18조(수익자명부) 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전자등록기관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전자등록기관은 관련법령·신탁계약서·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전자등록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통신 주소 2.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은 그 통보 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 및 실질수익자의 성명과 수익증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 수익자명부에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실질수익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⑧(생략)	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증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 ⑦(현행과 같음)
제19조(기준가격의 계산 및 공고)	①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 상에 계상된__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여 공고한다	①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 상에 계상된__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여 공고한다
제21조(환매청구 및 방법 등)	⑤실질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지체없이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⑥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에 기재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삭제)
제22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 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은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__공고되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⑤집합투자업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날(삭 제)부터__공고되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삭 제)
제24조(수익증권의 일부환매)	②제1항의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는 제21조 내지 제23조, 제25조 내지 제27조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해당 종류의 수익증권을 교부한다.	(삭 제)
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연기)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면 또는 전자통신으로 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그 통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면 또는 전자통신으로 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그 통지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수익자총회의 소집)	④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__그 통지가 수익자명부 또는 실질수익자명부상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자에게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집합투자업자__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④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__그 통지가 수익자명부상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자에게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집합투자업자__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31조(서면에 의한	②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	②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의결권 행사)	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또는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서면 및 참고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또는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서면 및 참고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34조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④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의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消却)하여야 한다.	(삭 제)
제36조(투자대상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추가)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제38조(운용 제한)	②제37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__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삭 제)
제39조(자산운용지시 등)	②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추 가)손해배상책임을	②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제40조(투자신탁보수)	②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②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재무상태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제41조(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 등)	②제1항에서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2.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②제1항에서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2.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전자등록 및 결제비용
제42조(투자신탁의 해지)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__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추 가)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__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제45조(상환금 등의 지급)	③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투자대상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	③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투자대상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우에는 전자등록기관 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8조(투자신탁재산의 결산서류 및 회계감사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제49조(신탁계약의 변경)	①집합투자업자가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__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__각 사유 제외) (추가)	①집합투자업자가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__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__각 사유 제외). 다만, 신탁업자의 중대한 법 위반 외의 사유로 신탁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경될 경우 신탁업자는 그러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직전 180일(이하 "손실보상기간") 동안 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손실보상기간 일수로 나눈 평균가액에 제40조에 따른 신탁보수율과 손실보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이하 "신탁업자 손실보상금")을 제40조에 따른 보수와는 별도로 수익자총회 결의일로 부터 10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신탁업자 변경에 따른 신탁업자손실보상금 인출은 신탁업자의 판단 및 결정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추 가)	협조를 다한다.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중대한 법 위반 외의 사유로 집합투자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경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손실보상기간 동안 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손실보상기간 일수로 나눈 평균가액에 제40조에 따른 운용보수율과 손실보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과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 고유재산으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비용(법률자문료 등)의 합(이하 “ 집합투자업자 손실보상금”)을 제40조에 따른 보수와는 별도로 수익자총회 결의 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집합투자업자변경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손실보상금 인출은 집합투자업자의 판단 및 결정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
제50조(투자신탁의 합병)	②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가액은 합병하는 날의 전일의	②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가액은 합병하는 날의 전일의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 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자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 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51조(수익자에 대 한 공시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 생 후 지체 없이__통보하여야 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 정 및 그 사유(추 가)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 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 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변경 및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 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 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 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추 가)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 생 후 지체 없이__통보하여야 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 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 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및 법시행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 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 우 나. 집합투자계약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다.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 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 경하는 경우 라.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 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 를 변경하는 경우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 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 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법시행령 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게시하는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 가)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추 가) ⑤(생 략)	경우에 한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 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삭제)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⑥(현행과 같음)
부칙	추 가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26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 (법령 개정사항 및 전자증권법 반영 등)